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28

발의연월일: 2025. 2. 10.

발 의 자:서지영·조정훈·박형수

박성훈 · 서일준 · 이인선

김용태 • 이헌승 • 서천호

최수진 • 곽규택 • 박충권

김승수 · 김대식 · 이종배

고동진 • 조경태 의원

(179]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률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, 신용보증,학자금 무상지급 등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
이러한 학자금 지원 제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의 경우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상 및 금액을 구분하고 있는데, 학자금 지원의 대상 및 금액 기준 산정의 주기를 법률에 명시하여 물가상승률 등 최신 경제 상황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, 해당정보에 대한 대학생들의 접근성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여

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9 신설).

법률 제 호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9(학자금 무상지급 기준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여 관보 또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.

-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결정하는 경우 전체 학자금 지원 현황, 평균 등록금 수준, 물가상승률 및 예산 상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그 밖에 학자금 무상지급 기준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49조의9(학자금 무상지급 기준
	등)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경
	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을 대
	<u>상으로 하는 학자금 무상지급</u>
	의 소득구간 및 금액에 관한
	기준을 결정하여 관보 또는 재
	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
	<u>하여야 한다.</u>
	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
	기준을 결정하는 경우 전체 학
	자금 지원 현황, 평균 등록금
	수준, 물가상승률 및 예산 상황
	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
	한다.
	③ 그 밖에 학자금 무상지급
	기준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
	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